

미투 없는 사회, 불가능한 꿈 아니다 - 미투 이전, 미투, 그리고 미투 이후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1. 대한민국은 왜 미투의 해일 속으로 들어갔을까?

미투 없는 사회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은 참신하다. 미투(#metoo)는 2018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며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더 불어 미투의 실태, 현황, 정책적 대응, 법제화를 위한 각종 심포지움, 정부부처의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등 각종 행사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지만, 과연 미투 없는 사회는 가능한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암수범죄(hidden crime)의 하나로 범죄화 되지 조차 않았었으나 이제, 피해자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인니까. 언젠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2019년 11월에 보도된 기사 제목을 보자. “양진호 회사의 승승장구”, “김학의 전 차관 무

죄 석방”, “남성접시에 고기 떨어준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고 해석한 법원”, “구하라 전남친 무죄 오덕식 판사, 다른 판결에서도 불법 촬영 눈감아 줬다.” 이게 과연 미투 이후의 사회인가.

권력형 성범죄자들은 무죄방면 되었고, 인간적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인지미숙, 디지털 성범죄 상황에 전혀 무방비하고, 아동과 여성이 여전히 죽어나가는 현실, 쓰리고 비통하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하도록 방치함으로서 더 이상 아무도 밀하지 않는, 그래서 미투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 그것은 젠더(gender)화된 사회이다. 가부장제 하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성장해 온 남성성이란, 남성적인 ‘그’에게 그들의 존재 이유, 즉 그들의 자

* 주된 관심분야는 성인지 교육, 젠더폭력 등이며, 주요 연구 및 저작물로는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교재(유아, 초저, 초고, 중, 고등) 개발(2015~2016)」,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의 이해(201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이 있음.

의식과 정체성이 타인을 지배하는 능력에 있다고 가르친다.¹⁾ 성역할에는 이미 차별이 내재해 있고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권한의 차이, 문화적 지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견고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그와 같은 구조 위에 성차별 및 성적 침해를 공고화하는 비정상적 권력이 존재한다. 장학ண으로 불리는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이 그 증거이다. 그뿐인가. 너무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성 상품화로 자본의 이득을 얻는 사람들, 성적 주도권의 행사가 남성의 특권이자 남성다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남성특권의식이 함께 결탁되어 있다.

하지만 목표를 작게 잡아보자. 미투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성폭력을 공론화함으로써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현상들을 목도하게 된 것은 전진이다.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감수성’,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이해는 보다 대중화되었다. 미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미투 없는 사회는 올 것이다. 와야만 한다. 적어도 미투 이후의 한국사회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미투 이전 변화의 징후 - 피해자 말하기

세계의 주목을 끌만큼 대단한 규모로 이루어진 한국 미투는 흑인 여성운동가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여성혐오와 성폭행을 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미투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한 출발점과 맥을 같이 한다. 미투는 ‘나도 그렇다.’ ‘나도 너처럼 나쁜 일을 겪어봤다.’ ‘너의 슬픔과 고통을 더는 일에 나

도 동참한다’는 의미의 말로 공감을 통한 권한부여(empowerment through empathy)라고 이 운동의 창시자에 의해 설명되었다.²⁾ 이러한 의미부여는 중요한데 그것은 피해자의 행위가 수동에서 능동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십대에 성폭행과 강간을 당했던 타라나 버크, 그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소녀들을 위해 이 운동은 시작한 것은 2006년이었고 하비 와인스타인의 추행을 알리면서 세계적 현상이 된 것은 2017년이었다. 그리고 2018년 우리나라에서 미투는 해일이 되었다.

2018년 상반기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전후로 문화예술계, 정계, 체육계, 학교 등에서 권위가 있거나 팬덤 그룹을 형성한 유명 인사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유권무죄의 부정의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좋은 일이었지만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다. 실명을 공개하고 증언을 한 용감한 피해자에게 존경을 표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일상은 어떻게 돌려놓어야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미투는 그 열기와 규모로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렇게 미투의 파장이 클 수 있었던 것은 ‘피해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그 귀는 미투 이전의 미투, 피해자 말하기로부터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운동가 김학순은 1991년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고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 활동이 있었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03년부터 시작한 생존자 말하기 대회, 2016년 강남역 사건 이후 성폭력 해시태그

1) 벨 혹스(2017),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문학동네.

2) 권재현 기자(2018.3.11.), 미투 운동, 백인 여배우가 아니라 흑인 여성이 시작, 동아닷컴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R000035730

김미선 기자(2001) "성폭력 가해자 실명공개한 이유", 오마이 뉴스

운동과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있었다. 촛불로 인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는 향상되었고 20,30대 여성은 중심으로 높아진 폐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중심

축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미투의 해일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

물론 정책적 뒷받침도 있었다. 2013년 친고제가

성폭력방지 등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성폭력예방교육 대상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16. 11. 22.>

(중략)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 16.>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폐지되어 성범죄의 수사가 용이해졌다. 2016년 5월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시행 '16.11.30.)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의무가 강화 되었다. 이것은 1999년부터 시작된 성희롱 예방교육과 더불어 젠더 폭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국민들이 교육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었고, 말하기의 역사를 통해 어느 정도 반향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

어연구센터는 ‘미투’ 운동관련 사회 전반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월이었다. 조사결과는 조금 놀라운데 지지자가 88.6%에 이르렀고 성별차이도 거의 없었다. 응답자 73%가 “‘미투’ 참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답했다. 이 수치는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확실함을 보여주었다. 이전에는 밀할 수 없었던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이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전 몇몇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변화의 흐름을 보고 있었다.

미투 이전 변화의 징후 - 주변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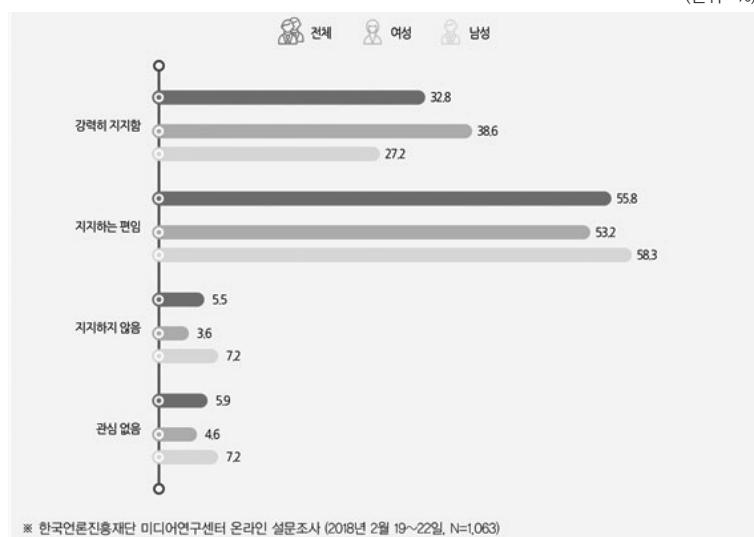
2. 88.6%, 미투의 지지자들

미투의 해일을 맞이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

2016년 신안섬 교권 침탈 성폭력 사건은 미투 이전에 이미 우리가 미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섬마을 지역주민이 파견 와

미투/위드유 운동에 대한 입장(성별 비교 포함)

(단위: %)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yung7910&logNo=221217911225&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kr%2Furl%3Fs%3Dl%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images%26cd%3D%26ved%3D2ahUKEwiCys7H5ZbmAhWVPAKHT-ID8gQjhx6BrgBERI%26url%3Dhttp%253F%252F%252Fm.blog.naver.com%252Fzyung7910%252F221217911225%26sig%3DA0Vaw1BEJAFIK4H_PonUULasIha%26ust%3D1575370015455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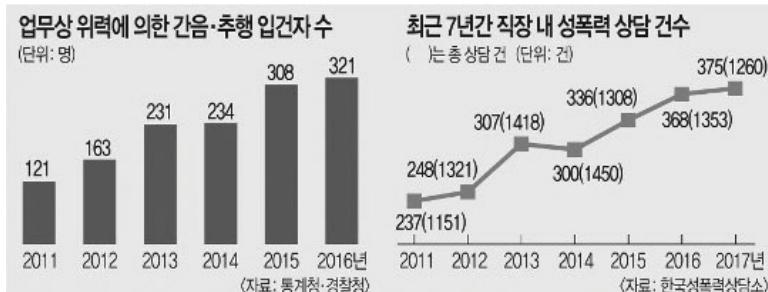
있던 여교사를 강제로 만취상태에 빠지게 한 후 특수강간을 행한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사건발생 이후 지역 주민은 피해자가 행동을 조심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의 태도를 보였다. 상대를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책임조차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행동패턴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주변인의 대응은 이전 사건과 확연히 달랐다. 피해자는 이불 등 피해증거물을 챙겨서 인근 목포 경찰서에 신고 했다. 피해 시간이 오전 1시인데 신고한 시간은 오전 2시경으로 그는 신고를 주저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페이스북에 사건 경위를 올리며 “큰일을 당하고도 담담하게 버티는 여자친구가 고맙다.”는 글을 남겼고 이와 같은 공론화가 없으면 사건이 왜곡될까봐 글을 올린다고 했다. 사건이 공식화되자 그는 페이스 북을 폐쇄했다. 네티즌들은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기사에 비난성 댓글을 달았고, 결국 사건 보도는 선정성을 벗어나 성범죄 사건으로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사건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똑똑한 대응이었다.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최소화되었고 가해자는 12년에서 1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 무렵 한 치킨업체 회장이 직원과 식사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끌려가다가 호텔로 놀러 온 주변 여성들의 도움으로 위기

를 벗어나게 된 사건도 발생했다. 피해자가 도와주세요라고 입소리로 말하자 지나가던 여성이 이를 알아채고 친구인척하면서 피해여성을 도왔다.

성폭력을 피해자가 숨겨야 할 수치로 생각하는 태도의 변화는 이미 직장내 성폭력 발생 통계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경찰관계자들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입건자 수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는 교육 및 제도개선에 의한 것이며 미투 운동에 힘입어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입건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투 현장 - 통념을 넘어 노동자 정체성으로

한국 미투는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 속에서 유사한 가부장적 전통을 지닌 중국이나 일본의 미투와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중국은 정부가 먼저 담론 자체를 막아 버렸고 결국 미투운동의 불모지가 되었다. 일본은 2017년 이토 시오리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백 하였으나 가해자가 일본 우익의 지지를 받고 있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피해자가 영국으로 이주했고 미미하게 저물어 갔다. 반면 한국은 미투가 쓰나미처럼 번져갔다. 피해자의 증언, 공론화, 지원단체의 생성, 정책적 변화 등으로 빠르게 이어 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5&aid=0001080903>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국민들 사이에서 균질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이나 지역사회의 특성, 직업이나 계층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변화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 변화해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아직도 강간 통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강간통념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의 옷차림 또는 정신상태 등에서 성폭력의 원인 찾기. 가볍게 건넨 성희롱이나 성적 농담을 별 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기, 남성다움이란 성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정복적인 것으로 표현하기, 여성적인 것은 성적으로 수동적인 것으로 표현하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앞날 걱정하기, 피해자가 입을 다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기, 피해자가 공동체 분열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기’ 등은 1970년대 제2세대 미국 여성주의에서 만들어진 강간문화가 가진 특성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오늘 날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투에 대한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갈라지기 시작했다. 미투를 지지했지만 무엇이 성폭력인지에 대한 생각은 달랐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디선가 명백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무엇이 성폭력이란 말인가? 그 기준이 다르다보니 성고정관념에 가득한 보도와 소문에도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수사과정 등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쓰거나 가해자의 입장은 옹호하는 기사를 썼고, 팬스를, 성별격차의 심화 등 미투의 부작용을 보도함으로써 본질을

훼손했다. 2019년 3월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로조사의 결과는 1년전에 비해 10%가량 떨어졌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74% 이상이 지지의사를 표하였고 ‘성적농담이나 신체적 접촉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나 ‘조직 및 사회의 여성차별적 문제와 관련해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다’와 같은 항목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4%와 64%였다.³⁾ 의미심장한 변화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을 때, 피해자가 민주노총 발행 <노동과 세계>에 기고한 글을 보자.⁴⁾ 기고문에 의하면 피해자는 ‘금융 채무자이자, 병환의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이었으며, 성과로 평가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학위를 떠야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조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원을 졸업했고 이후 기간제 노동자, 연구직을 거쳐 계약직 공무원이 되었고 공공기관에서 6년 정도 일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노동자와 같았으며 성실한 업무 수행자였다. 그가 단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모든 직무 수행을 멈추고, 임금이 절실히라도 불구하고 퇴사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1심 무죄판결의 이유를 보면 첫째,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으려 한 점, 둘째, 안전 지사 통역관 부부와 함께 와인바에 동행한 점, 셋째, 평소처럼 안전 지사를 지지하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점 등이 그것이

3) 진달래 기자(2019. 3.12), 미투운동 지지율 1년새 10%p '뚝' ,한국일보

4) 노동과 세계 편집실, (2018.09.20.), ‘노동자 김지은’이고 싶습니다. 노동과 세계

다. 피해자는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서 자동 박탈되는가? 정상적인 수행비서의 역할이 연모의 증거인가. 성폭력 피해자는 극도로 우울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명백히 가해자에게 무죄를 주기 위한 허위의 구성물인 것이다.

3. 공론화의 현장 –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을 외치다.

미투 현장 – 시위, 항의, 당부로 공론화하기

안희정 사건의 판결이 나기 몇 달 전, H대 불법촬영사건이 발생했다. 회화과 수업 도중 한 학생이 남성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포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사건 발생 후 11일 만에 피의자를 구속 포토라인에 세웠다. 미투의 정국에 가해자로 언급된 그 누구도 서지 않은 포토라인에서 그는 신분이 선연하게 드러나도록 사진 찍혔다. 여성 대상 불법촬영의 경우, 찍는 자, 올리는 자, 지우는 자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피해자들이 죽어 가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던 경찰과 검찰이 그토록 신속하게 수사를 한 행위에 대해 여성들은 문제제기했다. 시위 주체인 ‘불편한 용기’는 광화문, 혜화역 등에서 시위를 열었고, 주최 측 추산으로 1차 시위 1만5,000여명(5월19일), 2차 시위 4만5,000여명(6월9일), 3차 시위 6만여명(7월7일)에 이어 2018년 8월 당시까지 연인월 19만여명이 참여했다.⁵⁾

그들은 혜화역에서 모여 사발식을 하며 “동일범죄·동일수사·동일처벌”을 외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진이 게재되었던 워마드의 운영자를 익란물 유포방조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8월 들어 안희정 전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41942001&code=940100
선명수 기자(2018.08.04.), “나의 삶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경향신문

5) 선명수기자 (2018.08.04.) “나의 삶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경향신문

충남지사의 1심 무죄판결이 났다. 무죄판결문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피해자의 진술은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이자 초범인 이른바 흥대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지 하루 만에 나온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분노했다.

‘불꽃페미액션’은 잇다른 집회, 법원에서의 항의 행동 등을 이어 나갔다. 안희정 공대위는 언론사에게 가해자의 주장 받아쓰기를 그만하라고 당부했다. 언론의 영향력으로 가해자 가족의 주장은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확신되고 새로운 사실이 등장한 것처럼 많은 시민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언론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명백한 2차 가해임을 분명히 했다.

여성단체는 시위를 주도하고 법원에 문제제기를 했으며 대언론 담론 투쟁도 이어갔다. 그리고 2019년 9월 안희정은 징역 3년 6개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 판결에 중대한 이력을 남긴 사건이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으로서 추행, 일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 안에 성인지 감수성, 업무상 위계, 성적자기결정권, 그루밍, 가스라이팅 등 수많은 성범죄와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었고 본 사건의 진행과정과 판결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과 관련된 이슈를 학습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우리의 인식은 비약했으며 그런 점에서도 안희정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4. 문화예술계 미투, 여성서사의 시작

미투 현장 – 성폭력은 천재들의 기행이 아니다.

고은의 성추행을 고발함으로써 문학계 미투의 선봉에 섰던 최영미 시인의 등단 소감이라는 시를 보면 문단의 성추행 현실이 단면처럼 드러난다.

내가 정말 시인이 되었던 말인가
신문 월평 스크랩하며
비평가 한마디에 죽고 사는
(중략)
내가 정말 여, 여류시인이 되었던 말인가
술만 들면 개가 되는 인간들 앞에서
밥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고, 고급 거시기라도 되었던 말인가

- 최영미, 등단소감(1993)

문단성폭력사건은 2016년부터 공론화되어 있었다. 문단 내 성폭력 문제에 맞서 싸운 고양예고졸업생연대 ‘탈선’은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써내려갈 문학의 이름을, 환경에 종속되고 부여받는 성질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⁶⁾라고 선언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징계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대응하였으나 제명 혹은 자격정지 등 거의 영향력이 없는 징계의 수준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이를 통해 그간의 문인, 평론가들의 성범죄가 드러났다.

이제 문화예술계 미투를 살펴보자. 문화 예술 속에서 성애는 실존에 직면하는 위대한 경험으로 묘사되곤 하지 않는가? 과연 그러한 묘사는 정당하고 적

6) 탈선(2016.12.)‘게르니카를 회고하며’, <문화과 사회>

절한 것인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몸을 주체로서 인식하고 경험하지 못한다. 인식의 주체이자 표현 주체는 남성으로 그들의 시선에 의해 여성은 타자화, 대상화된다. 남성중심사회가 극찬하는 ‘미적 성취’는 여성과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인 경우가 많았다. 음악, 미술 등 순수 예술로 부터 영화, 연극, 대중음악 등 대중예술까지 예술은 성별 고정 관념을 강화, 재생산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므로 미투 정국에 이윤택, 오태석, 유명 감독과 배우들, 음악가들 등 문화예술계 인사가 줄줄이 성폭력 범죄자로 지목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들이 소위 예술이란 이름을 걸고 별인 성착취 행위는 치졸하고, 끔찍했지만 오랫동안 심지어 천재의 기행으로 회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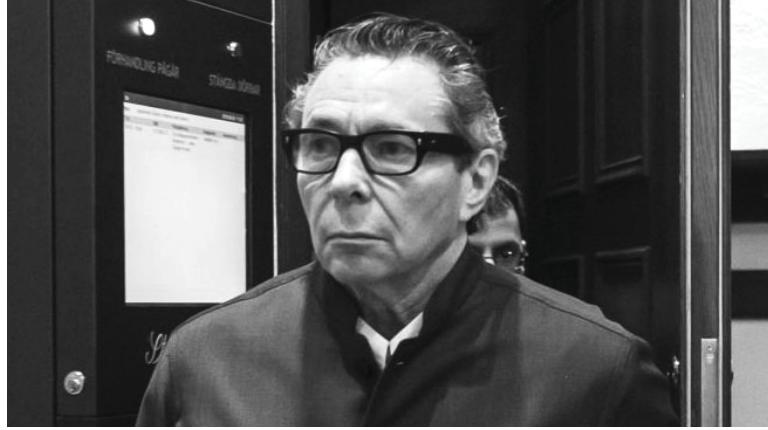
문화예술분야가 이와 같은 문제가 관행적으로 발생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계의 인맥은 폐쇄적이며 심사 및 추천의 권한이 소수에 집중돼있는 데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 부조리를 보고도 침묵하는 태도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 둘째, 성적 기행을 예술행위의 하나로 합리화하는 분위기가 있어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가 마치 천재들의 기행이나 되는 듯 회자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문학계 성폭력이 이슈가 되고 사회가 온통 젠더폭력과 여성혐오 논쟁으로 들끓었던 시점에도 예술의 이름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행위는 여전했다. 작가 이외수가 단풍을 ‘저년’, ‘화냥기’라는 말로 표현한 글을 폐북에 올렸고 이를 문제삼자 독서량이 부족한 사람으로 폄하했다. 이로써 문학사에서 떠올릴 수 있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김유정의 <소낙비> 등 명작으로 분류되었던 소설들이 아내구타, 성매매를 당연한 것으로 묘사하고 김동인의 <감

자>는 빈곤에 내몰린 여성의 성매매와 타살을 마치 여성의 비뚤어진 욕망의 결과인 것처럼 학습해 왔던 해묵은 현실을 재확인했다. 문화예술을 통해 드러나는 자유로운 성 표현이라는 것이 결국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하거나 성착취 행위를 정당화하는 포장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미투 중 가장 추악하다고 말해지는 폭로는 영화계로부터 나왔다. 성적 판타지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영화인 베르나르 베르톨루치 감독의 <빠리에서의 마지막 탱고(1972)>에서 말론 브란도는 19세인 신인배우에게 성관계 장면을 어떻게 찍을지 사전합의하지 않았다. 문제의 장면은 버터를 이용한 항문성교였다. 상대 배우는 오랜 트라우마와 지병에 시달렸고 약물사용,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수차례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감각의 제국(1976)>도 세계 영화사에서 성 정치학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회자되는 바, 후지 타츠야가 지속적인 배우 활동을 했음에 비해 상대배우는 이후의 활동이 알려지지 않았다. 2013년 촬영장에서 부당한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2017년 피소된 김기덕 감독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를 처분 받았다.

김기덕 감독은 이러한 사건을 보도한 MBC ‘PD 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혀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기덕 감독은 또 다시 한국여성민우회 3억원, ‘PD수첩’과 증언한 배우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나쁜남자>에 조재현과 출연하였던 상대배우는 이 영화 이후 거의 활동이 없었다. 예술 혹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서 타자화된 상품 등으로 전락시키는 것, 여성의 성적 복종을 노골적



출처 : 스웨덴의 한림원은 노벨문학상 선정위원회 중 강간혐의가 있는 장끌로드 아르노의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노벨상을 시상을 취소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81&aid=0002946040>

임병선 기자(2018.10.01.), 노벨상 발표 시작한 날, 문학상 취소시킨 아르노에 2년형 선고, 서울신문

으로 표현하고 이를 시각적 영상미로 포장했던 영화에서 여배우에 행한 만행에 대하여 그들의 우울증과 실종, 침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미투 현장 –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하기, 여성 서사의 시작

연극계의 미투도 참혹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로 수위가 매우 높았다. 3월엔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을 결성했다. 그들은 피해자를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을 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피해 발언은 자신의 고통을 직시한 후 수 많은 위협요소를 무릅쓰고 하는 용기 있는 ‘나’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우리’입니다.”⁷⁾

연극연출가 이윤택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시인 고은은 자신의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와 최영미 시인을 대상으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만화가 박재동은 자신의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 하였으나 패소하였다.

2019년 6월, 최영미 시집 <다시 오지 않는 것들>을 출간했다. 2019년 11월,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화제작이 되었고 일본과 대만에서도 공감이 시작되었다. 여성서사가 이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했다.

5. 미투없는 세상을 위하여

미투의 성적표를 정리할 수 있을까. 범죄를 입증 할 수 없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무혐의 처분,

7) 김수정 기자, (2018.03.08.), 언론, ‘미투’ 고발자와 피해 상황 전시를 멈춰라, 노컷뉴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4935391여성가족부는 2018년 3월 7일 오전 제1차 '#Me too, 공감·소통 간담회'를 열었다.](https://www.nocutnews.co.kr/news/4935391여성가족부는_2018년_3월_7일_오전_제1차 '#Me too, 공감·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한영기자 (2018.03.08.), 언론, '미투' 고발자와 피해 상황 전시를 멈춰라, 노컷뉴스

피해를 알리긴 했으나 처음부터 진위조차 가려보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고 무고로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혹은 보내고 있는 피해자와 단체가 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2차 피해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대체 피해자의 존엄성과 노동권은 어디서 회복할 수 있는가.

2019년 12월 안희정 사건을 공론화의 장에 올려놓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판도를 돌려놓은 김지은은 2019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상했다. “의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 또 다른 폭력에 갇혀있다. 악플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⁸⁾는 수상소감은 고통스럽다. 참여연대가 양진호 제보자를 의인상에 시상하고 자 했으나 그가 사실상 웹하드 카르텔 공모자에 가깝다는 의혹으로 수상이 보류되었다. 성을 매개로 한 범죄의 카르텔이 모세혈관처럼 스며있는 현실을 또다시 직면하게 된다.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들, 스토킹 치벌법, 강간의 기준을 폭행 협박으로부터 동의여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여성

단체와 법조인들에게 미투는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이거 해봐야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상대방 처벌 원하세요?”,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에…여자가 겁도 없이”와 같은 말은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내려갔다. 경찰에 의한 2차 피해와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추진된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지난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종사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기도 하였다. 2018년 12월 7일 여성 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 당하는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8) 노동과 세계 편집실, (2018.09.20.), '노동자 김지은'이고 싶습니다. 노동과 세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 권력형 성범죄자가 멀쩡히 돌아다니고, 심지어 미투 가해자가 다시 현장에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피해자가 실명을 내걸고 하는 이 위험천만한 행위는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있다. 미투 없는 사회는 가능한가?

버닝썬 사건이 유야무야되고 마음이 시끄럽던 나는 무더위로 축축 쳐진 강의장에 들어갔다. 교육대상은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을 하는 공무원들이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세상이 이러하니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 모두 열심히 교육에 참여했고 실습도 잘 했다. 미투 이후 전과는 달라진 교육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미투의 성과로 가장 큰 것은 시민 의식 속에서 성차별, 성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성장했다는 것으로 정리한다. 시민들이 폭력에 대한 민감성, 성인지 감수성이 늘어날수록 미투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미투 없는 사회는 오고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미투가 기회이고 혁명이었다. 그러나 이제 미투의 방식이 조금 더 체계화되어 피해자의 2차가해 방지 및 피해자 권리 향상을 위한 매뉴얼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는 미투가 발생하자 영화계, 오페라 가수, 음악계 종사자 등이 다수로서 그리고 익명으로 가해자를 고발하여 피해자를 보호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국장주 협회, 영화협회, 노조에 속한 변호사들의 지원도 있었다. “여배우들의 미투 이후 65개 직업군의 여성들이 익명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렇게 수

천 명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젠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또 모든 극단이 연습 첫날 성폭력에 대한 정책과 피해자 대처 방안을 큰 소리로 낭독한다. 법이 바뀐 것도 큰 성과다. 이전까진 성폭력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는데 이제는 가해자가 성관계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⁹⁾ 이런 사례 등을 적용하여 우리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미투 없는 세상을 위하여 – 우리는 교육한다.

우리의 미투 해일은 자존을 위해 피해를 드러낸 용감한 ‘그’들과 여성운동가, 여성단체, 법조인들의 공론화와 투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미투를 경험하며 처음부터 정의의 개념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함께 이룬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역차별이라 주장했으며 팬스룰이 적용될 것이라 협박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법조인이거나 언론이어서 영향력이 컸다.

그러므로 미투없는 세상이 되려면, 그리고 2차 가해 없는 세상이 되려면 전국민이 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젠더폭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투없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교육한다.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를 개정(시행 ’19.6.19.)하여 예방 및 교육의무를 강화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구체화 및 국가기관 등의 장이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9) 이지영 기자(2018.10.09.), 스웨덴에서 미투 운동을 익명으로 한 이유는? 중앙일보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법적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방법과 질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니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새롭게 주목할 것은 2019년 12월에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도 학교 성평등 교육 의무화 정책의 필요성에 높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¹⁰⁾ 스쿨 미투로 드러난 학교의 성차별 및 성폭력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교육부의 적극적 개입이 중요하다. 2009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Guidelines on Sexuality Education)’도 ‘젠더 편견에 기반한 사회적 관행과 폭력, 젠더 불평등이 강화되는 방식에 대해 가르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인간은 기본적 권리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경우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자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함을 가르치도록 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성평등

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성장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도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한 바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성 인권 교재를 개발하는 등 사전에 대비해온 것은 사실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초·중등·고등 학생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교육부의 성교육 교재는 성평등과 폭력예방을 향해 가야하는 근본적인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은 인간 정체성의 일부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장이기도 하다. 양질의 성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관계의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예제의 하나로 손색이 없을 것 같아 벨기에에서 개발한 [Four Flag System]을 첨부한다. 이것은 학교(0에서18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 과도한 패닉을 방지하고 관련 행동이 적절한지 또는 문제적 행동인지를 구분하여 적절한 교육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다.

[Four Flag System]

- 4 Flag System은 Sensoa[벨기에 성생식전문기구]라는 기관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음
- 학교(0에서18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 과도한 패닉을 방지하고 관련 행동이 적절한지 또는 문제적 행동인지를 구분하여 적절한 교육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임
- 플래그 시스템은 성적 행동을 식별하기 위한 6가지 기준, 4가지 깃발 등으로 결합됨

〈성적인 행동을 구분하는 6개의 기준〉

- + 동의 (consent) : 양자가 모두 원함
- + 자발성 (voluntarity) : 어떠한 강압이나 강제성이 없었음

10) 마경희(2019).20대 현상: 탈가부장 사회를 향한 도정과 갈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평등 (Equality) : 발달상 평등함
- + 발달 (development) : 그 연령대에 맞는 행동인가?
- + 주변환경 (context) :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가? 사적영역인가?
- + 자아존중 (self-respecting) : 자신을 해치는 행동이 아닌

〈4가지 깃발〉

- 해당 행동이 어긋나지 않으면 초록 기
-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노랑 기
- 어긋나는 부분이 다수이면 빨강 기
- 심하게 어긋나는 항목이 검정 기

4 FLAGS				
consent	ok	-+ok	- ok	-- ok
voluntarity	ok	-+ok	- ok	-- ok
equality	ok	-+ok	- ok	-- ok
age or development	ok	-+ok	- ok	-- ok
context	ok	-+ok	- ok	-- ok
Self-respecting	ok	-+ok	- ok	-- ok

〈활용법〉

- 행동방식을 크게 다음의 8개로 나누어 깃발을 구분하는 매뉴얼을 제시함
 - : (1) 행동에 대해 이야기 한다
 - (2) 느낌을 이야기 한다
 - (3) 괜찮다면 왜 괜찮은지 이야기 한다
 - (4) 무엇이 안 괜찮은지 또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한다
 - (5) 동의 여부에 대해 이야기 한다
 - (6) 행동의 결과가 무엇일지 설명해준다
 - (7) 결과를 행동으로 보여 준다
 - (8) 어떠한 방식이든 보고가 된다
- 예를 들어 노랑 깃발일 경우 (1)행동논의부터 (5)동의 등의 행동을 취하지만 결과를 설명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임.
- 빨간 깃발이나 검정 깃발의 경우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모든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

Rutgers (웹사이트 <https://www.rutgers.international/programmes/flag-system>)

• 참고문헌 •

김양희(2013),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례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마경희(2019), 20대 현상; 탈가부장 사회를 향한 도정과 갈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변신원 외(2017),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의 이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희진 엮음(2019), 미투의 정치학, 교양인
탈선(2016.12.), ‘게르니카를 회고하며’, <문학과 사회>

리베카 솔낫(2015),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창비.
벨 흐스(2017), 모두를 위한 폐미니즘, 문학동네.

여성가족부(2016), 한국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9),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9), 양성평등 교육·진흥안내서
노동과 세계 편집실, (2018.09.20.), ‘노동자 김지은’이고 싶습니다., 노동과 세계,

What is the Flag System? | Sensoa Flag System
<https://www.rutgers.international/programmes/flag-system>

권재현 기자(2018.3.11.), 미투 운동, 백인 여배우가 아니라 흑인 여성이 시작, 동아닷컴
김수정 기자(2018.03.08.), 언론, ‘미투’ 고발자와 피해 상황 전시를 멈춰라, 노컷뉴스
선명수 기자(2018.08.04.), “나의 삶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경향신문
이사야 기자(2018.03.15.), 직장 성폭력이 남녀문제? 권력 이용한 가해!… 7년치 상담 분석, 국민일보
이지영 기자(2018.10.09.), 스웨덴에서 미투 운동을 익명으로 한 이유는? 중앙일보
임병선 기자(2018.10.01.), 노벨상 발표 시작한 날, 문학상 취소시킨 아르노에 2년형 선고, 서울신문
진달래 기자(2019. 3.12), 미투운동 지지율 1년새 10%p ‘뚝’, 한국일보